

[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-191호]

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 지원사업 모집 2차 공고

<해외 의학회 연계 KOL 확산 사업>

2026년도 『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 지원사업(해외 의학회 연계 KOL 확산 사업)』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국내 의학회, (의료)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6월 12일

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



※ <붙임서식>

- ① (별지 1호) 해외 의학회 연계 KOL 확산 사업 신청서
- ② (별지 2호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④ (별지 3호) 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 지원사업 운영 지침

제안요청서	해외 의학회 연계 KOL 확산 사업	공모 유형	자유 공모형							
▶ 지원목적 ○ 국산의료기기의 해외 의료진 내 사용경험 확대와 공신력 및 신뢰도 확보, 해외 의료기관 내 진입 지원 - 해외 주요 의학회에서 국내 의료진을 활용하여 국산의료기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,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시연·교육·전시·확산 활동 추진 - 국산의료기기를 의료 환경에서 주로 활용하고, 해외 주요 의학회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 의료진(Key Opinion Leader) 발굴 및 확대										
▶ 지원대상										
대 상			제출서류							
지원기관 (단독)	○ 해외 국제학술학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세션 기획·운영·참여할 수 있고, 해외 학회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①국내 의학회 사무국 단독 및 의료기관 컨소시엄 또는 ②의료기관의 단독 및 (의료)기관 간 컨소시엄 ※ 컨소시엄일 경우,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업무 전반을 주관하고 운영해야 함		(필수) 1. 사업자등록증							
주관기관 + 참여기관 (컨소시엄)	* 국내 의학회 : 대한(차)의학회 소속 학회 및 해당 전문분야에서 공식적으로 등록·운영되는 학술학회를 의미하며, 필요 시 공식적으로 조직된 세부학회 포함할 수 있음. (단, 사설·비공식 연구모임은 불가함) ** 국내 의료기관 : 상급종합병원(의료법 제3조의 4), 종합병원(의료법 제3조의 3), 전문병원(의료법 제3조의 4) 또는 대학병원(치과대학·한과대학 포함)									
▶ 지원규모 및 내용										
지원 기간	지원 규모	지원내용 및 범위								
단년도	1개/최대 250백만원	○ 해외 의학회(국제학술대회, 1개 이상 참여) 연계하여 국산의료기기를 홍보하는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								
		- (필수조건) 사업계획에는 해외 의학회에서 국내외 의료진 매칭한 교육·훈련 프로그램 형태(세미나 등 학회 프로그램) 및 국내 기업 제품 전시, 국내외 의료진(의학회)과 국내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가 반드시 포함(하기 내용은 예시임) 되어야 하며, 국내 의료기기 기업 최소 3개사* 지원 필요								
		* 단, 지원기업은 보산진 지원사업 중 동일 학회의 참가비 및 제품 운송비 중복 지원 불가								
		※ 교육·훈련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국내 의료기기 제품을 동일 제품(품목명)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함								
	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주요 내용(예시)</th></tr><tr><td>학회 프로그램</td><td>○ 해외 학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세션 및 자체 세미나, 런치 강의, 데모·시연, 라이브 서저리, 핸드온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* 단, 국내 제품을 경험한 의료진이 해외 학회 무대에서 국내 제품/술기 경험 공유·홍보·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* 해외 학회 기간 중, 개최지 또는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한 핸드온 및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운영 포함하여 수행 가능</td></tr><tr><td>국내 기업 /제품 전시</td><td>○ 학회 학술대회 내 참여기업 통합부스 제작·운영비, 장치비 등 * 단, 기업 전시물(제품·장비 등) 운송에 따른 비용은 수행기관이 편성·집행하여야 하며, 기업에 직접 지급은 불가함</td></tr><tr><td>네트워킹 행사</td><td>○ 학회 기간 중 국내외 의료진 및 기업, 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(Korea Meets*) 기획·운영 *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로, '(예시) Korea Meets 학회명 2026' 제목 및 BI 활용하여 홍보·추진 필요</td></tr><tr><td>홍보비</td><td>○ 해외 학회 연관된 저널, 공식 프로그램 책자 및 웹사이트 광고 게재비, 현장 배너·포스터 제작비, 현지 미디어·전문지 광고 집행비 등</td></tr></table>	구분	주요 내용(예시)	학회 프로그램	○ 해외 학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세션 및 자체 세미나, 런치 강의, 데모·시연, 라이브 서저리, 핸드온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* 단, 국내 제품을 경험한 의료진이 해외 학회 무대에서 국내 제품/술기 경험 공유·홍보·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* 해외 학회 기간 중, 개최지 또는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한 핸드온 및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운영 포함하여 수행 가능	국내 기업 /제품 전시	○ 학회 학술대회 내 참여기업 통합부스 제작·운영비, 장치비 등 * 단, 기업 전시물(제품·장비 등) 운송에 따른 비용은 수행기관이 편성·집행하여야 하며, 기업에 직접 지급은 불가함	네트워킹 행사	○ 학회 기간 중 국내외 의료진 및 기업, 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(Korea Meets*) 기획·운영 *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로, '(예시) Korea Meets 학회명 2026' 제목 및 BI 활용하여 홍보·추진 필요
구분	주요 내용(예시)									
학회 프로그램	○ 해외 학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세션 및 자체 세미나, 런치 강의, 데모·시연, 라이브 서저리, 핸드온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* 단, 국내 제품을 경험한 의료진이 해외 학회 무대에서 국내 제품/술기 경험 공유·홍보·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* 해외 학회 기간 중, 개최지 또는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한 핸드온 및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운영 포함하여 수행 가능									
국내 기업 /제품 전시	○ 학회 학술대회 내 참여기업 통합부스 제작·운영비, 장치비 등 * 단, 기업 전시물(제품·장비 등) 운송에 따른 비용은 수행기관이 편성·집행하여야 하며, 기업에 직접 지급은 불가함									
네트워킹 행사	○ 학회 기간 중 국내외 의료진 및 기업, 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(Korea Meets*) 기획·운영 *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로, '(예시) Korea Meets 학회명 2026' 제목 및 BI 활용하여 홍보·추진 필요									
홍보비	○ 해외 학회 연관된 저널, 공식 프로그램 책자 및 웹사이트 광고 게재비, 현장 배너·포스터 제작비, 현지 미디어·전문지 광고 집행비 등									

※ 지원규모는 접수현황, 경쟁률, 정부 예산 계획 등에 따라 선정 평가 시에 조정될 수 있음

▶ 성과목표 및 결과 활용

- 최종평가 시 필수 결과물로 '최종 보고서', '공개용 요약 보고서', '해외 의료기관 진입 및 매출 실적'을 제출해야 함(공개용 요약 보고서는 3년간 공개 예정)
*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(www.khidi.or.kr/device)에 등록 예정(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입력 진행)
- 중간 평가 시, 사업 수행이 현저히 미비하여 사업기간 내 완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해지 및 지원금의 환수 가능
- 최종평가 시 목표달성 여부 판단 기준 등(아래)

수행 내용	필수 달성 지표	비고
보고서 및 결과 활용	○ 해당 사업 수행 중간/결과보고서 제출 ※ 중간평가 시 진행사항 보고 / 최종평가 시 완료사항 보고 ○ 해당 사업 수행 후 대표 성과(수행 내용)를 웹진/웹포스터 제작 후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한 대외 홍보(1회) 실시 ○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 및 핸드온 프로그램, 부스 운영 등 증빙 자료	필수(*) 중간/결과 보고서
의료기관 진입 및 매출 (수출)실적	○ 지원 기업제품의 국내외 의료기관 진입 및 매출(수출) 실적 제출 (총 2회 - 1차 10월 2차 12월) ※ 사업 종료 후, 3년 이내 실적 조사 협조 필수	필수(*) 제출서류 별도 안내

- 사업 수행을 통한 주요 성과 홍보 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사항을 표시
- 사업수행 종료 후, 의학회·유관기관 연계 발표 및 전시 등 성과홍보를 진행할 수 있음
- 주관 및 참여기관,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관리기관에서 추진하는 성과 모니터링 및 기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함

▶ 특이사항

- 신청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,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산진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,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구성
(이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 주관기관의 참여기관에 대한 예산은 민간이전비로 편성 및 참여기관에서 집행)
-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
 - 국외출장은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에 한함
 - 국외출장은 출장 전 별도 양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. 사전승인 요청 시 출장일정, 출장자, 일정별 계획, 사업의 연관성, 기대효과 등을 서면(공문)으로 승인 요청 [운영지침 별첨 참조]
 - 사업비 집행 항목은 여비, 인건비, 재료비, 임차료, 재료비, 자문비(강의료), 용역비, 홍보비, 회의비, 수수료 등으로 한정함
단, 타 항목 집행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문의 필수
 - * 컨소시엄(양 기관 합산)의 인건비는 총 예산의 30% 이내로 책정
- 기타사항
 - 동 사업은 비R&D지원 사업으로 3책 5공에 미해당
 - (BI) Korea Meets



[참고] 2026년부터 달라지는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체계



구분	(26년 신규) 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 지원
주요 내용	트랙 ①[기업 지원형] 해외 카데바랩 · 시뮬레이션 센터 등 활용 기업 교육 · 실습 비용 지원(최대 100백만원, 단년도) 트랙 ②[의학회 지원형] 국내 의학회 · 의료진 주도로 해외 의학회 연계한 의료기기 교육훈련 · 홍보 · 네트워킹 행사 개최 비용 지원(최대 250백만원, 단년도)

※ 사례 1. 국내 기업의 해외에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비용 지원

(예시: 기업 주도의 현지 교육시설 및 병원 등 연계)

- (기존) “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” 사업에서 지원

⇒ (변경) “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 지원” 사업의 트랙①에서 지원

※ 사례 2. 해외 의학회 연계 교육훈련 및 제품 홍보

(예시: NASS 2024, UAA 2025, RSNA 2025 등)

- (기존) “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” 사업에서 지원

⇒ (변경) “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 지원” 사업의 트랙②에서 지원

☞ 상기 사례 이외, “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”에서 지속 지원

1

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K-의료기기(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 포함) 제품의 교육·훈련을 통한 신뢰 확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입 확대 촉진
- 주요 대표 진료과별 학회와 연계한 국산 의료기기의 시연·교육·전시·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해외 의료계 내 사용경험 확대와 성과 확산 추진
- 해외 주요 의학회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 대표 의료진(KOL, Key Opinion Leader)과 혁신적인 국산 의료기기·의료기술(술기) 발굴하고, 이를 기반으로 한 동반 홍보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 지원

2

사업 내용

□ 지원 대상

- (지원 기관) 해외 국제학술학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세션 기획·운영·참여할 수 있고, 해외 학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①국내 의학회 사무국 단독 및 의료기관 컨소시엄 또는 ②의료기관의 단독 및 (의료)기관 간 컨소시엄

※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,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업무 전반을 주관하고 운영해야 함

* 국내 학회 : 대한(차)의학회 소속 학회 및 해당 전문분야에서 공식적으로 등록·운영되는 학술학회를 의미하며, 필요 시 공식적으로 조직된 세부학회까지 포함할 수 있음. (단, 사설비공식 연구모임은 불가함)

* 국내 의료기관 : 상급종합병원(의료법 제3조의 4), 종합병원(의료법 제3조의 3), 전문병원(의료법 제3조의 4) 또는 대학병원(치과대학·한의학·한과대학 포함)

□ 지원 조건

- 해외 의학회에서 국내·외 의료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형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국내 의료기기 기업 최소 3개사 이상 지원 필요

< 지원 기업 유의사항 >

- 지원 형태는 학회에서 공식 주관(개최)하는 발표(세션 및 세미나 등), 전시, 핸드온, 또는 학회 내에서 자체 기획한 데모·시연, 라이브서저리 등으로 제안할 수 있으나, 국내 제품에 대한 학술적·활용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품 사용 경험을 보유한 국내·외 의료진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및 운영 필요
- **국제 인증(CE, FDA 등)을 보유한 제품**, 해외시장진입 및 수출증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제품 위주로 지원 필요 (즉, 해외 수출이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)
 - ※ 단, 프로그램 내 동일 제품(품목명)만으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
 - ※ 지원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중 동일 학회 중복 지원 불가

□ 지원규모 및 기간

지원형태	지원기간	지원 규모
수행기관 (단독)	단년도	최대 250백만원
주관기관 + 참여기관 (컨소시엄)		

* 지원규모는 접수현황, 경쟁률, 정부 예산 계획 등에 따라 선정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

※ 지원 예산은 「국고보조금」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통해 관리하여함

□ 지원 내용

- 해외 의학회* 연계하여 국산의료기기를 홍보하는 활동 등에 소요되는 **비용 지원** (하기 내용은 예시임)
 - *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1개 이상

구분	주요 내용 (예시)
학 회 프로그램	○ 해외 학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세션 및 자체 세미나, 런천 강의, 데모·시연, 라이브 서저리, 핸드온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* 단, 국내 제품을 경험한 의료진이 해외 학회 무대에서 국내 제품/술기 경험 공유·홍보·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* 해외 학회 기간 중, 개최지 또는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한 핸드온 및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운영 포함하여 수행 가능
국내 기업 /제품 전시	○ 학회 학술대회 내 전시 부스 제작·운영비, 장치비 등 * 단, 기업 전시물(제품·장비 등) 운송에 따른 비용은 수행기관이 편성·집행하여야 하며, 기업에 직접 지급은 불가함
네트워킹 행 사	○ 학회 기간 중 국내외 의료진 및 기업, 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(Korea Meets*) 기획·운영 *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로, '(예시) Korea Meets : 학회명 2026' 제목 및 BI 활용하여 홍보·추진 필요
홍보비	○ 해외 학회 연관된 저널, 공식 프로그램 책자 및 웹사이트 광고 게재비, 현장 배너·포스터 제작비, 현지 미디어·전문지 광고 집행비 등

□ 사업 성과목표

수행 내용	필수 달성 지표	비고
보고서 및 결과 활용	○ 해당 사업 수행 중간/결과보고서 제출 ※ 중간평가 시 진행사항 보고 / 최종평가 시 완료사항 보고 ○ 해당 사업 수행 후 대표 성과(수행 내용)를 웹진/웹포스터 제작 후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한 대외 홍보(1회) 실시 ○ 학술대회 세미나·발표 및 핸드온 프로그램, 부스 운영 등 증빙 자료	중간/결과 보고서
해외 의료기관 진입 실적	○ 지원 기업(제품)의 해외 의료기관 진입 실적 제출 (총 2회 - 1차 12월, 2차 '27.1월) ※ 사업 종료 후, 3년 이내 실적 조사 협조 필수	제출 별도 서식 안내

* 성과지표의 목표 내용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수정·반영할 수 있어야 함

□ 기타 사항

- (사업비 집행) 정부지원금은 2회 분할(7:3) 지급하며, 1차분은 사업 시작 시, 2차분은 중간점검(9월) 후 사업비 교부
 - * 총 사업비는 동 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
 - *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“e나라도움 시스템” 관리를 통하여 집행
- 사업비의 교부·집행·정산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 등 관련 규정과 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

< 해외 의학회 연계 KOL 확산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>

- 주관기관은 **협약체결일로부터 1주 이내**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에 총사업비를 생성
- 주관기관은 사업비 집행 및 예산 관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사용(예치형 과제)하여야 함
- 본 과제는 정산과제로, 사업종료 즉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(회계법인 정산비용은 사업비에 반영할 것)
- 관리기관은 사업추진 현황 및 결과보고 등의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이 미흡하다 판단되면 **사업 중단 또는 지원금 삭감 및 환수 조치가 가능함**

□ 문의처
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박현주 연구원
(☎ 043-713-8565, hjpark13@khidi.or.kr)

3

사업추진 절차

□ 추진절차

공고 및 신청 접수	한국보건산업진흥원	공고일로부터~ 6.29(월) 까지
↓		
선정평가 및 선정	한국보건산업진흥원 (평가위원회)	6월 말~7월 초
↓		
협약체결	한국보건산업진흥원-주관기관	7월 중
↓		
착수보고 및 사업 추진	수행기관	7월 중
↓		
중간점검(서류)	한국보건산업진흥원	9월 중
↓		
사업종료 (결과보고서 제출) * 지정된 회계 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포함	수행기관	'27년 1월 31일
↓		
결과보고	수행기관	1월 말
↓		
평가 결과 활용 (평가 결과 공개 및 홍보지원)	보건복지부, 보건산업진흥원	2월~

※ 추진절차는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선정평가 및 결과보고 시 과제를 담당하는 **주관기관의 사업책임자가 발표**(대리인 발표 시 평가 전 관리기관과 협의 필요)

□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절차(달라질 수 있음)

선정 통보 및 협약 서류 안내	한국보건산업진흥원	7월 중
↓		
필요 서류 제출	수행기관	통보 후 15일 이내
↓		
협약체결 *전자시스템 활용	한국보건산업진흥원-주관기관	7월 중
↓		
선금(70%) 지급	한국보건산업진흥원-주관기관	7월
↓		
중간보고 및 잔금(30%) 지급	한국보건산업진흥원-주관기관	9월(예정)
↓		
결과 평가 및 사업종료 (결과보고서 제출) * 지정된 회계 법인(인)을 통한 정산보고서 포함	수행기관	'27년 1월 31일

- * 협약 체결 및 선금 지급 필요 서류 : 협약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수입인지, 선금청구 공문, 선금 교부신청서, 이행(계약)보증보험증권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,
- * 잔금 지급 필요 서류 : 잔금청구 공문, 잔금 교부신청서, 회계정산보고서, 중간보고서

□ 평가 및 선정 방법

서류검토 (한국보건산업진흥원)	· 주관 및 참여기관, 주관책임자의 자격, 참여 제한, 과제 첨부서류 등의 검토 · 서류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 선정 (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기회 부여, 자료요구 마감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탈락처리)
↓	
서면평가 또는 구두평가 (전문가 평가위원회)	· 서면평가 또는 구두평가(평가결과 70점 미만 및 구두평가 불참 시 탈락) ※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(1차), 발표평가(2차)로 선정평가 실시 가능
↓	
과제선정	· 과제별 최종점수에 따라 지원과제 선정

- * 구두 평가 시 일시·장소 별도 통지

□ 평가항목 (평가 시 항목 변동 가능)

항목		세부내용	배점
수행기관 역량의 우수성 (20)		○ 수행기관 총괄구성의 적정성 및 조직 운영 역량 ○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	10
		○ 해외 국제학회 협력 네트워크 보유 및 활동 실적 ○ 참여 의료진의 국제학회 활동 실적	10
사업 계획의 적절성 (70)	해외 학회 선정의 적정성	○ 해외 학회 선정의 전략성 및 적정성 ○ 선정 학회의 영향력 및 학술임상 홍보 확산 효과	20
	국산 의료기기 지원 의지	○ 국산 의료기기 활용 및 홍보 전략의 구체성 ○ 지원기업 선정의 적절성 (시너지 창출 효과 등) ○ 국내외 의료기관의 국산 제품 도입 연계 의지	30
	추진 계획의 적절성	○ 사업 수행 체계·일정의 적절성 ○ 예산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	20
파급효과 (10)		○ 사업 종료 후 해외시장 진입·수출 확대 가능성 ○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홍보·인지도 제고 효과 ○ 수행기관의 성과관리·확산 계획의 적절성	10

4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공고 및 신청기간

- 공고일로부터 ~2026.6.29.(월), 18:00 까지

□ 신청방법: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

- 메일 제출처: hjpark13@khidi.or.kr

□ 신청서류 ※ 전자파일 제출 후 원본 1부를 우편 제출 요청할 수도 있음(필요 시 안내)

- (사업신청서) 사업신청서(별지 양식) 1부(전자문서는 e-mail 제출)

- * 원본 전자 파일은 이메일 제출하며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,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(1개의 파일로)

※ 사업신청서 1p의 경우 주관기관 직인 날인 후 PDF 파일 함께 제출

- (증빙서류) 부록서류는 반드시 사업계획서 뒤, 붙임으로 제출 필수

- * 사업계획서 본문 내 해당 증빙서류의 번호를 명확히 표기

- (공통 구비서류)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 각 1부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별지 2호) 1부

※ 별지 붙임 : [1]사업신청서, [2]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[3]운영지침

□ 최종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

- (최종사업계획서) 최종사업계획서(별지1호 양식)에 따라 작성하여 선정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기타 협약서류와 함께 관리기관(진흥원)으로 제출
- (사업계획 변경)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사전 승인 및 보고를 통하여 변경 사용
- (사업결과보고서) 수행기관은 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성과물을 사업 종료일(12월 10일) 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

※ 본 사업은 사업 운영 지침 및 협약서에 근거하여 수행하며,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함.

□ 예산편성 및 집행

- (사업비 교부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에 따라, 분할교부 방식으로 교부(상반기, 하반기)
- (사업비 정산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에 따라, 수행기관은 사업비(국비)에 대한 정산을 위탁정산기관에 의뢰하여 집행예산 정산을 받아야 하며, 결과물과 함께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 및 반납
- (사업비 변경) 사업비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공문 및 양식(운영지침의 별표 3 양식)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용

※ 모든 예산 집행은 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”을 사용해야하며, 예산편성, 집행, 증빙, 변경, 정산 등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 함

※ 운영지침에 따라 자체변경/관리기관 승인사항을 참고하여 변경처리

-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동 사업 신청에 관련된 의료기기법 등 유관 규정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,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
-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음
-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
-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이며,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,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,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함
 -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
-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,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- 제출 서류 중 위조 또는 누락된 서류 발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